

#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안

의안 번호	2340
----------	------

제출년월일 : 2012. 11. 19.  
제출자 : 안산시장

## 제정이유

- 시민의 안전증진 및 도시의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안전도시 사업의 범위, 안전도시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안산시에서 발생하는 손상을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증진과 도시의 안전문화 형성 등 안전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손상과 안전 및 안전도시사업을 명확히 정의하고 안전증진에 노력하여 궁극적으로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도록 함(안 제2조)
- 다. 안전도시 시민의 권리와 참여 및 시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내지 제6조)
- 라.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핵심적인 안전도시사업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7조)
- 마. 안전도시협의회를 안전도시 구현을 촉진하는 협의·조정기구로 두고 그 협의회의 설치와 기능 및 구성·운영사항에 관한 규정을 둠(안 제8조 내지 안 제13조)
- 바. 안전도시실무위원회를 안전도시협의회 산하에 두어 안전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그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5조)
- 사. 안산시에 발생한 산업재해 및 교통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 정보를 상호 공유하도록 함(안 제16조)
- 아. 안전도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목적달성을 및 사업수행에 적합한 전문성을 지닌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 제정 조례안 : 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 관계법령발췌서 : 해당 없음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 없음
- 예산수반사항 : 615,870천원  
[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안 비용추계서 ]

###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 제정안 제6조

#### 나. 비용 발생 요인

-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 제3조는 안전도시 사업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 2. 비용추계

#### 가. 비용추계의 전제

- 안전도시 조례안은 2013년 1월 1일부터 조례를 적용시행하는 목표로 규정하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의 운영비용을 추계한다.
- 안전도시사업의 범위에 따른 사업 예산 추계 수준은 안전도시를 추구하는 타 시·도의 2012년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비 수준으로 우리시 1차연도는 안전도시기반구축과 안전보건협력사업을 기준으로 전제한다.
- 산업재해 등 손상예방을 통한 안전증진이 안전도시사업의 핵심사항으로 사업손상예방프로그램 운영 세출예산은 1차년도 대비 2차년도 증감율을 각 분야에 반영하여 지속적·능동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전제로 한다.

####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비고
총 소요액		92,270	130,900	130,900	130,900	130,900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	1)안전도시기반구축	일반운영비	59,700	60,000	60,000	60,000	60,000
		여비	1,260	1,200	1,200	1,200	1,200
		업무추진비	3,000	3,000	3,000	3,000	3,000
		일반보상금	1,710	1,700	1,700	1,700	1,700
	2)사고손상예방 프로그램운영	민간이전	20,000	60,000	60,000	60,000	60,000
		일반운영비	6,600	6,000	6,000	6,000	6,000
	3)안전보건협력사업						

#### 다. 재원조달방안 : 시 자체재원

- 예산담당부서와 협의 [기획예산과-13854(2012.8.28.)호]  
- 201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요구서 제출 -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도시건설국 재난안전과장(이장원)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13년)	2차연도 (2014년)	3차연도 (2015년)	4차연도 (2016년)	5차연도 (2017년)	계
세 입	-	-	-	-	-	-
세 출	92,270	130,900	130,900	130,900	130,900	615,870
안전도시기반구축	65,670	64,900	64,900	64,900	64,900	325,270
시예방손상프로그램운영	20,000	60,000	60,000	60,000	60,000	260,000
안전보건협력사업	6,600	6,000	6,000	6,000	6,000	30,600
재원 조달	자체 사업수입	자체 사업수입	자체 사업수입	자체 사업수입	자체 사업수입	-
의존 재원	소 계	-	-	-	-	-
	보조금	-	-	-	-	-
	지방교부세	-	-	-	-	-
	-	-	-	-	-	-
자체 수입	소 계	-	-	-	-	-
	지방세수입	-	-	-	-	-
	세외수입	-	-	-	-	-
	-	-	-	-	-	-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있음

- 입법예고 : 2012. 08. 29. ~ 09. 18. (20일간)
- 결과반영 : 2012. 09. 24.

기타 참고사항 : 붙임

-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 제정안
- 입법예고 검토결과반영 결재문
- 입법예고 제출의견 및 검토결과
-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 제정 계획(방침 결정문)

#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의 관할 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손상을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증진 및 도시의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손상” 이란 불의의 사고나 의도적인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체 또는 정신에 미치는 건강상 해로운 결과가 발생한 상태로서, 그 발생원인을 통제하여 예방 가능한 것을 말한다.
2. “안전” 이란 사고나 손상을 당할 위험이 없는 편안한 상태를 말한다.
3. “안전도시”란 안전과 보건을 포함한 것으로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이고 체계적인 참여를 통해 일상생활, 산업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 질병 및 손상을 예방하고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
4. “안전도시사업” 이란 제3호에 규정된 안전도시의 구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안전증진” 이란 모든 개인이나 조직 또는 지역사회가 재난·안전사고 및 손상 예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한 모든 노력을 의미하며, 구성원들의 태도와 행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안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안전도시 구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의 실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 ②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공동체에서 손상예방과 안전증진을 위하여 책임이 있는 각계각층이 상호 협력하는 기반을 조성한다.
- ③ 시장은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도시 사업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 ④ 시장은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안산시 안전도시 사업을 홍보하고 전파하며, 상호간 교류 및 협력을 통하여 안전도시 발전에 기여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와 참여)** ① 모든 시민은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가 있으며, 이를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 또는 관계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모든 시민은 안전도시 사업 추진과정에 능동적·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5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손상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안전수칙 등 제반 규정사항을 준수하며, 스스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의 책무)** 시장은 안전도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조직 및 인력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다.

**제7조(안전도시사업의 범위)** ① 시장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도시 사업의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등에 관한 사항
3. 손상예방 및 안전증진 프로그램 개발·보급·운영에 관한 사항
4. 안전도시 사업의 평가 및 지표설정 등 용역에 관한 사항
5. 손상감시체계 구축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6. 안전 관련 시설의 설치, 물품 및 설비개선 등 지원·장려에 관한 사항
7. 안전용품 보급 등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8. 안전도시 사업의 국내·외적 교류 및 활동에 관한 사항
9. 상호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안전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10.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의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산업재해예방 센터의 설치 등 운영에 관한 사항
12. 각 실무부서간의 업무분담과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안전도시 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

② 제1항의 사업 중 적합한 사업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안전도시협의회 설치)** 시장은 지역사회의 역량을 모아 안전도시 구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안산시 안전도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제9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안전도시 사업 추진계획 및 발전방안

2. 안전도시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
3. 관련 기관·단체의 역할분담과 상호 연계·협력·지원
4. 민·관 합동 실천운동 추진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10조(협의회 구성)** ① 시장은 안전도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안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안전도시사업과 관련된 기관·단체의 장
  3. 시장이 임명하는 소속 공무원
  4. 그 밖에 안전도시와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
-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제11조(협의회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신분변동,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협의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협의회 운영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 ③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협의회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소속 기관·단체의 장으로서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
2.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5조(안전도시실무위원회)** ① 안전도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협의회 산하에 안전도시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의 안전도시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협의회를 구성하는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

2. 시장이 임명하는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안전도시와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

④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생활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보건안전, 시설안전, 범죄안전, 식품안전, 재난안전 등 분야별로 분과를 운영할 수 있다.

⑤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시의 안전도시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⑥ 실무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관련기관의 협조요청 등)** ① 협의회와 실무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0조 제4항 각호에 따른 기관·단체의 장은 안산시에 발생한 산업재해 및 교통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 정보를 상호 공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단체 등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목적달성 및 사업수행에 적합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안전도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위탁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운영지원)** ① 시장은 제17조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재난안전과
입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재난안전과장 이 장 원
	계장·팀장 직위·성명	안전점검계장 강 영 철 (행정 2158)
	담당자 성명·전화	강 영 철 (행정 2158)

#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2330
----------	------

제안년월일 : 2012. 12. 7.  
제 안 자 : 도시환경위원장

## 1. 수 정 이 유

- 실무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명확히 함.
- 안전도시 사업에 대하여 전부를 위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운영지원에서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삭제함.

## 2. 주 요 골 자

- 실무위원회의 위원의 구성을 명확히 함.(안 제15조제2항)
- 사업의 위탁 범위를 축소함.(안 제17조제1항)
- 운영지원에서 공유재산의 무상사용을 삭제함(안 제18조제2항)

#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40명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안전도시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안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목적달성 및 사업수행에 적합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안전도시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안 제18조제2항을 삭제한다.

## 조 문 대 비 표

원 안	수정안
<p><b>제15조(안전도시실무위원회)</b></p> <p>① (생략)</p> <p>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의 안전도시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p>	<p><b>제15조(안전도시실무위원회)</b></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안전도시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p>

원 안	수 정 안
<p>③ (생략)          ④ (생략)          ⑤ (생략)          ⑥ (생략)</p>	<p>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p>
<p><b>제17조(위탁운영)</b></p> <p>①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목적달성 및 사업수행에 적합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안전도시 사업의 <u>일부</u> 또는 전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생략)</p>	<p><b>제17조(위탁운영)</b></p> <p>①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목적달성 및 사업수행에 적합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안전도시 사업의 <u>일부를</u> 위탁할 수 있다.</p> <p>② (현행과 같음)</p>
<p><b>제18조(운영지원)</b></p> <p>① (생략)          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p>	<p><b>제18조(운영지원)</b></p> <p>① (현행과 같음)          ② &lt;삭제&gt;</p>